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1016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혁빈, 김재홍

피고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호

변론 종결2024. 8. 29.

판결 선고2024. 10. 17.

주 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 5.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2. 2. 23. 및 2022. 6. 14.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823,946,796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78,219,170원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286,975,316원을 각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별지3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배당액을 위 표 '경정하는 배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1)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 상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이 시행 및 시공한 평택시 E 소재 F건물의 수분양자들이다.

2) 원고들 중 원고 G, H,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위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1), 항소심에서 C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2), 위 판결은 2023. 4. 28. 확정되었다. 원고 G, H, I, J, K도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위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3), 항소심에서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4), 위 판결은 2023. 7. 14. 확정되었다(이하 원고들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총칭하여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2017. 12.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경위

1) C은 2017. 12. 29.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부산 남구 L건물 M동 제11층 N, O호, 이하 위 N호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위 O호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P(상호변경 전: Q) 소유의 위 L건물 M동 제11층 R, S호(이하 '이 사건 R, S호'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4억 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B은 2022. 2. 23. 위 근저당의 공동담보 중 이 사건 R, S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공동담보 일부소멸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2021. 5.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경위

C은 2021. 5. 10. 피고 A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이라 한다).

라. 2022. 2. 23.자 및 2022. 6. 14.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경위

1) C은 2022. 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T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물상보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R, S호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이라 한다).

2) C은 2022.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T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물상보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R, S호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1억 6,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근저당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배당표 작성

1)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의 배당요구종기인 2023. 1. 23.까지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Q에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었고, 2024.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Q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각 가압류등기5) (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는 같은 날 각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 중 2024. 6. 25. 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에 기하여 별지3 표 '배당금액'란 기재 금액이, ②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578,219,170원이, ③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에 기하여 286,975,316원이 각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A, B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4. 6. 27. 이 사건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배당이익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15 내지 17, 20, 21, 29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C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의 F건물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2018.경 발생한 채권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C이 피고 A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면서 피고 A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 및 T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다만, 원고들은 피고 A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제1근저당에 관하여, 원고들 중 F건물의 레지던스형을 분양받은 일부 원고들(원고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H, J, K)을 제외한 나머지 호텔형을 분양받은 30명의 원고들(이하 '이 사건 30명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C과 피고 A,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나)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는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10 판결 등 참조).

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 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등 참조).

마) 채권자가 이미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된다. 비록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는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배당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여전히 다른 책임재산을 공취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원래 위 가압류채권을 포함한 일반채권들의 만족을 담보하는 책임재산 전체를 놓고 보면 위와 같은 물상보증으로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역시 가압류채권자도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가압류채권자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물상보증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C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30명의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이므로 별지4 표 '불만족된 채권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1,823,946,796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보전채권 등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A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경료되었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인 피고 A는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30명의 원고들이 C에 대하여 갖는 실제 채권액은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은 그 초과하는 채권액의 범위에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제2근저당과 관련하여 현재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실익이 없다거나, 이 사건 제3근저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 이후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와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인 피고 B과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으로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하게 되므로 일반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책임재산 전체 측면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증거 및 갑 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AG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AG'라 한다)가 2018. 2. 14.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3. 17.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6), 위 판결에서 C의 AG에 대한 80억 원 상당의 채무 및 이에 대한 21,672,514,077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채무가 있음이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청구채권액 합계 약 23억 5,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관련 사건의 각 1심 판결이 2022. 1. 28. 및 2022. 5. 19.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앞서 본 증거 및 갑 13,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A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 T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으로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각 행위는 원고들이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한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AG와 C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AG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가압류 사건, 원고들과 C 사이의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관한 경과와 상세 내용,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C과 피고 A의 관계,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A, B에 악의가 있었다는 점이 추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1) 피고 A

피고 A는 '경영난에 처해 있는 C에 운영자금을 융통해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C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A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A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B

(가) 피고 B는 'AG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서의 청구채권액 1,798,632,300원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채권액은 58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213억 3,700만 원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C에 관한 신용 정보 등을 통해 C의 기업등급을 상거래 신용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등에 따라 안정성 면에서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bb 등급으로 판단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은 과실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C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갑 9, 10, 11, 14, 17,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는 2019. 2.경부터 경료되어 있었고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23억 5,000만 원 상당인 점, ㉡ AG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에서 AG의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AG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일부에 기하여 C의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1. 4. 2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2021. 4. 26. 피고 B에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 피고 B에 대한 청구채권액이 580,000,000원이더라도 전체 청구채권액이 약 18억 원에 상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C의 채무변제 능력과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P 소유의 이 사건 R, S호의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인데,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R, S호가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위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이와 함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R, S호를 공동담보로 2017. 12. 29. 경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R, S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2022. 2. 23. 공동담보 일부 소멸에 의한 부기등기가 경로되었는데 위 부기등기의 경로 시점이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과 상당히 근접한 점을 고려하면, C의 자금난이 상당히 심각한 시점에 C에 신규자금 유통도 없이 T의 채무 담보를 위한 물상보증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5,467,000,000원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피고 B의 채권만족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 배당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급효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은 그 설정 당시부터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가 배당기일 당시 사해행위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신고액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대구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14807 판결7)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Q에 매각되어 Q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는 2024. 6. 3.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에 기하여 별지3 표 '배당금액'란 기재 금액이, ②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578,219,170원이, ③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에 기하여 286,975,316원이 각 배당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A, B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배당이의의 소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30명의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1,823,946,796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에서 2024. 6. 25.자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78,219,170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86,975,316원은 각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별지3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배당액은 별지4 표 '신고된 채권의 안분비율' 기재에 따라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위 표 '경정하는 배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주미소

판사정수호

별지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가합509989 판결

2)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2010932 판결

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19. 선고 2019가합405101 판결

제12665로 접수된 가압류등기, 2019. 3. 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9카단803764)에 기하여 2019. 3. 13. 제18231호로 접수된 가압류등기 및 2019.

5. 30.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압류결정(2019카단61898)에 기하여 2019. 5. 30.

제32537호로 접수된 가압류등기

6)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18가합510548 판결, 2022. 9. 7. 항소기각 및 2023. 2.

2.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23. 2. 3. 확정됨

7) 2007. 2. 9. 상고 기각되어 확정